

교원인사규정

제정 1986.01.03.

제48차 개정 2019.12.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자격,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 등 교원의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2조(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을 통칭한다.

② 전임교원으로 일반교원, 강의전담교원, 외국인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둔다.

③ 강의전담교원 및 외국인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은 신규임용에 따른 채용형과 재직 중인 교원을 지정하는 지정형으로 구분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임용한다.

1. 교수 : 정년까지(신규임용의 경우 2년)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6년

⑥ 비전임교원으로 강사, 명예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대우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수, 임상외래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객원교수를 둘 수 있다. 각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명변경 2019.12.30.] [전부개정 2019.12.30.]

제3조(교원의 자격) 교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별표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조명변경 2019.12.30.]

제4조(임용) ① 교원의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정년보장임용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

② 교원의 승진임용과 재임용은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과 교수업적평가심의위원회의 업적심사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정년보장임용은 정년보장심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5조(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하되, 총장은 예외로 한다. 다만,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로 본다.

[조명변경 2019.12.30.] [전부개정 2019.12.30.]

제6조(교원 업적평가) ① 교원은 교육, 연구, 사회협력 및 참여봉사 등에 대한 업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원 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7조(임면) ① 교원의 임면은 정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 중 강사, 명예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대우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수, 임상외래교수, 객원교수의 임면 또는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교원을 임용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과 승진 및 업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8조(임용일자의 소급금지)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였을 경우
3. 징계 재심결과에 따라 원징계를 변경할 경우
4. 발령을 취소할 경우

제2장 신규임용

[장 명칭변경 2019.12.30.]

제9조(임용원칙)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임용의 지원자격은 교원의 종류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과의 신설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10조(임용절차) ① 전임교원의 공개채용 방법은 기초 및 전공심사, 공개발표심사,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별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신규임용 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칙 상의 모집단위별로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신규임용 교원의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우리대학교에서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④ 신규임용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우리대학교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신규임용 예정자의 연구실적 충족기준과 발령일 전 제출서류는 교원인사관리준칙으로 정한다.

⑥ 신규임용 예정자의 학위는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증한다.

1. 국내 학위의 경우 학위수여 대학에 학력조회를 의뢰하여 학위의 진위를 확인한다.
2. 해외학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 학위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학위의 진위를 확인한다.
3. 학위의 진위에 관한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학위검증위원회에 2차 조사를 요구한다.

⑦ 교원은 학과(부)와 대학원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만을 전담하는 경우 연구소에 소속될 수 있다.

[조 명칭변경 2019.12.30.] [전부개정 2019.12.30.]

제11조(전임교원의 임용직급) ① 신규임용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의 특별채용 시 직급부여와 신규임용 교원의 경력환산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

③ 교수로 특별채용된 신규 임용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3 또는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3. 학위취득이 허위라고 판정된 사람

[전부개정 2019.12.30.]

제3장 승진임용

[장 명칭변경 2019.12.30.]

제13조(승진소요연한 및 요건) ① 교원의 승진은 다음 각 호의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 연한에 달하고 현직급 임용기간 내에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승진 요건을 충족한 교원을 상대로 한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
2. 부교수에서 교수 : 6년

②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함에는 박사학위 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거나 예·체능계를 포함한 특수한 전공분야에서 업적이 탁월하여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 명칭변경 2019.12.30.] [전부개정 2019.12.30.]

제14조(승진시기 및 절차) ①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② 교원의 승진임용은 제2조 5항에서 정한 직위의 기간으로 임용한다.

③ 제13조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교원 중 교원인사관리준칙에 의거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학교발전 공헌도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이 승진 임용한다.

④ 타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교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 년수는 전적대학의 재직 당시 경력을 일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2년제 대학 포함)의 경력은 70%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승진임용 심사는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는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하며, 심사평정표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15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교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가. 정직 : 18월
 - 나. 감봉 : 12월
 - 다. 견책 : 6월
3. 교수연구 및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교원
4.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교원
5. 학내·외에서 비교교육적인 언동 및 허위사실의 유포로 학교와 동료 교수의 학덕, 인격 및 명예를 손상시킨 교원

② 각 직급의 교원이 동일 직급에서 다음의 연한 안에 승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며 교내연구비 및 연구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조교수 : 9년

2. 부교수 : 9년

[전부개정 2019.12.30.]

제4장 정년보장임용

[장 신설 2019.12.30.]

제16조(정년보장임용 대상자)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직급의 교원

2. 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재임용 심사를 받는 교원

[본조신설 2019.12.30.]

제17조(정년보장임용 심사기준 및 절차) ① 교수의 정년보장임용은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되, 제16조에 해당하는 교원에 한한다.

② 교원의 정년보장 임용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③ 교원의 정년보장임용 평가기준은 교수업적평가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1조 3항에 의해 임용된 교수의 정년보장 심사는 현직 임용기간 내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10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 명칭변경 2019.12.30.] [전부개정 2019.12.30.]

제18조(정년보장심사위원회) ①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본교에서 정하는 정년보장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정년보장을 심사한다.

②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5장 재임용

[장 신설 2019.12.30.]

제19조(재임용 절차) ①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원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 심사, 심사결과의 통지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20조(시기 및 기간) ① 교원의 재임용일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기간은 제2조 5항의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21조(재임용 심사기준) ① 재임용은 현직 임용기간 내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8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은 교육관계 법령 준수와 교원인사규정, 교원인사관리준칙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후 총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22조(재임용 기준 미 충족교원에 대한 조치)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6장 교원평가

[장 신설 2019.12.30.]

제23조(교원평가의 기준) ① 교원평가는 2년 단위 연구실적 100점 이상으로 격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자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연구실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 SCI-E)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24조(평가의 제외) ① 교원평가의 대상은 전임교원 중 일반교원 및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에 한하며, 강의전담교원, 외국인 전임교원 및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원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교무위원, 법인사무국장, 한방병원장과 병가자는 교원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기간의 적용은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1조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25조(평가기준 미충족 교원에 대한 조치) 교원평가 결과 평가기준 미충족 교원은 연구수당을 삐감하되 세부적인 조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7장 교원인사위원회

[장 변경 2019.12.30.]

제26조(설치와 운영)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51조에서 제58조 규정에 의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8장 보 수

[장 변경 2019.12.30.]

제27조(보수에 관한 규정) 교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28조(초임 호봉책정) 교원의 초임호봉책정은 국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9장 복 무

[장 변경 2019.12.30.]

제29조(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30조(겸직금지) ① 전임교원은 타 기관에 전속하거나 자유업(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설계사, 세무사 등 기타 상근직)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와 법령상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타 대학에의 출강은 학기 개시 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31조(교원의 복무자세) 교원은 전력을 다하여 교육법 정신의 구현에 진력하며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32조(휴직) ① 교원의 휴직에 관한사항은 정관 제44조,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휴직 교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학교 발전에 공이 있는 교원 또는 그 휴직사유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보수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9.12.30.]

제33조(학과 간 겸직근무) 총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교원에 대하여 학과 또는 부서의 겸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0.]

제3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항은 교직원복무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0.]

제10장 신분보장 및 징계

[장 변경 2019.12.30.]

제35조(신분보장 및 징계) 교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는 정관 제44조에서 제50조의3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고, 교원의 징계는 정관 제59조에서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11장 보 칙

[장 변경 2019.12.30.]

제36조(관계법규의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 관계법령 및 정관에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37조(교원정원) 교원의 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하되, 대학, 학과 및 전공별 실정을 참작한다.

[전부개정 2019.12.30.]

제38조(보직관리) ① 보직 임명은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1월 말, 7월 말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전부개정 2019.12.30.]

부칙

이 규정은 198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명된 학과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 개정은 198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제7조 제3항의 적용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후로 한다.

제3조(보직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의 보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의 보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제7조 제1항 적용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최소 근무연수는 1994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차기 1회에 한하여 누적년수를 계산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단, 대학 교육기관의 근무 경력은 누적년수에 산입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9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29조의 인정환산율의 적용은 '98년 9월1일 기간제

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단, 승진의 경우 '98년 10월 1일 신규승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삭제 (1998. 5. 11)

제3조(승진소요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10조(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1항의 직급별 최저승진소요연한은 1998년 4월 1일 이후 승진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적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11조(승진임용), 제15조(정년보장임용) 제1항의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대상자의 연구실적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경과를 두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승진	적용시점	연구실적물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	적용시점	연구실적물
부교수	'98. 4. 1		교수	'98. 4. 1	
	'98.10. 1	200%		'98.10. 1	200%
	'99. 4. 1			'99. 4. 1	
	'99.10. 1	250%		'99.10. 1	250%
	2000. 4. 1 이후	300%		2000. 4. 1 2000.10. 1	300%
				2001. 4. 1 이후	400%

② 이 규정 제15조(정년보장임용) 제2항의 현직교수의 정년보장임용심사대상자의 연구실적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경과를 두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정년보장임용	적용시점	연구실적물
교수	'98. 3. 1	
	'98. 9. 1	200%
	'99. 3. 1	
	'99. 9. 1	250%
	2000. 3. 1 2000. 9. 1	300%
	2001. 3. 1 이후	400%

제3조(승진 제한년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12조(제한년수) 2항은 '98.10.1자 승진임용 제외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6조1의2항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1의 2항에 의해 임용된 교수의 정년보장 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은 제15조3항에 의하되, 2001년 3월1일 기간제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③ (제11조5항 적용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제11조5항의 적용은 2000학년도 전반기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14조(기간제임용)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2002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30조(인정환산율)는 2003년 4월 1일자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② (제13조 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자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제11조, 제31조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1조(승진임용), 제31조(연구실적물의 평가)는 2005학년도 승진대상자에 한하여 시행전 규정과 선택하여 평가 받을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과-1033, 2004.12.22)

이 규정은 200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636, 2005.6.8)

이 규정은 200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98, 2005.10.18)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 2006.1.4)

이 규정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93, 2006.1.31)

이 규정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25, 2006.8.8)

이 규정은 200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63, 2007.1.17)

이 규정은 200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92, 2007.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1조(승진임용 및 교원 평가), 제15조(정년보장임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대장자의 연구실적 기준은 2007년 4월 1일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하되, 별표 3과 같이 경과를 두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1조(승진임용 및 교원 평가) 제1항 4호 및 제3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최초평가는 2008년 12월 31일에 실시한다.
③ 제11조(승진임용 및 교원 평가)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건과학대학 소속 학과중 의료경영학과는 경상대학, 간호학과와 한방의료공학과는 이공과대학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92, 2008.5.13)

이 규정은 200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인사무국-312, 2008.8.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08월 0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2009년도부터 기간제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교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2008년도 기간제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승진, 정년보장임용 및 교원평가) 제1항 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최초 평가는 2009년 12월 31일에 실시한다.

부칙 (기획예산과-455, 2009.4.9)

이 규정은 2009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201, 2011.10.18)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84, 201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변경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직급 전환하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포함하여 적용한다.
2. 이 변경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제11조의 변경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용기간(4년)으로 적용한다.
3. 이 변경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교수의 승진제한연한은 제13조의 변경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승진제한연한(7년)으로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064, 2012.8.9)

이 규정은 2012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484, 2012.10.29)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81, 2013.10.17)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27, 2014.07.30)
이 규정은 2014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088, 2014.12.15)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56, 2015.06.08)
이 규정은 2015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6, 2016.01.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임용기간 및 기간제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제5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1. 2016.3.1.자 기간제임용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 종전규정에 의해 6년으로 기간제임용된 교원이 2016.9.1.자부터 재임용 시기가 도래할 경우 1회(2년)의 재임용 기회를 부여하며, 승진 제한년수 내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시 퇴직한다.

③ (승진 제한년수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4.1.자에 최초로 승진 임용 대상이 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인사무국-296, 2017.6.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해 2016년 9월 1일자부터 2년의 임용기간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6년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54, 2017.09.07)
이 규정은 2017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27, 2019.02.28)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73, 2019.07.15)
이 규정은 2019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팀-641, 2019.12.30.)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부개정 2019.12.30.]

교원의 자격기준

직명	학력 연구·교육 경력연수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교수		4	6	10
부교수		3	4	7
조교수		2	2	4
강사		1	1	2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